

시정권고사례

시정권고사례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언론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그 시정을 해당 언론사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결된 사례를 자체심의 및 신청심의로 구분하고, 유사한 사건의 경우 한 건의 보도 내용만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제3자에 의한 신청심의를 2009년 2월 6일 법률개정으로 8월 7일 중단됨에 따라 그 이전에 접수 처리된 신청심의 사례를 수록한 것입니다. …… 편집자주

자체심의 시정권고

〈의결번호 2009자심1〉

• 대상보도

- 자치안정신문 2008. 11. 24.자 2면 「편의점 강도 피해자 검거」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강도 사건 등 특정강력범죄 보도 시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강도 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일하던 편의점의 주소 및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 유사 보도 시 이와 같이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1. 21.

〈의결번호 2009자심2, 3〉

• 대상보도

- 시대일보 2008. 12. 16.자 19면 「모텔 금품 4인조 강도 70대 주인 살해」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08. 12. 15.자 사회면 「논산, 모텔 금품 4인조 강도... 70대 주인 살해」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강도 살해 사건 등 특정강력범죄 보도 시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강도 살해 사건 피해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운영(또는 종사)하는 모텔의 주소를 리 단위까지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 유사 보도 시 이와 같이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1. 21.

〈의결번호 2009자심4~12〉

• 대상보도

- 제주일보 2008. 12. 4.자 5면 「‘음주 운항’ 어선 전복사고 불러」 제하의 기사
- 제주타임스 2008. 12. 9.자 4면 「어선 전복 혐의 항해사 구속」 제하의 기사
- 한라일보 2008. 12. 4.자 4면 「어선-화물선 충돌 사고 항해사 구속영장 신청」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08. 12. 3.자 사회면 「제주해상 선박 충돌 원인, 당직사관 음주운항」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08. 12. 3.자 사회면 「어선과 충돌사고 화물선 항해사 영장」 제하의 기사
- 미디어제주 2008. 12. 3.자 사건사고면 「어선 충돌사고 화물선 당직사관 ‘음주’」 제하의 기사
- 이슈제주 2008. 12. 3.자 사회면 「어선 충돌사고 삼진력키호 당직사관 음주운항」 제하의 기사
- 제주의 소리 2008. 12. 3.자 사건사고면 「1명 사망, 1명 실종 선박 충돌 화물선 항해사 구속영장」 제하의 기사
- 제주투데이 2008. 12. 3.자 사회면 「제주서 선박 전복사고 원인은 음주운항」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항해사로 있는 선박의 명칭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취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

한다.

2009. 1. 21.

〈의결번호 2009자심13~15〉

• 대상보도

- 전주일보 2008. 11. 28.자 11면 「檢 ‘옥소리’ 간통 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제하의 기사
- 일요시사 2008. 12. 7.자 제673호 37면 「“박철은 100명도 넘는 여성과 문란한 성생활을 했다”」 제하의 기사
- 주간현대 2008. 12. 7.자 제590호 63면 「“그는 100명 넘는 여자와 성관계… 누가 죄질 더 나쁘죠?”」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특정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는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간통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인 탤런트 옥소리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사생활에 관해 일방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여 고소인 박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향후 유사 보도 시 그 보도대상이 연예인이라고 할지라도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1. 21.

〈의결번호 2009자심16, 17〉

• 대상보도

- 조선일보 2009. 1. 10.자 A4면 「“집 밖 거의 안 나온 암전한 청년”」 제하의 기사

- 일요서울 2009. 1. 18.자 제768호 14~15면 「경제 독학한 30대 백수... “진짜 미네르바일까? 거짓일까?”」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의 성명, 나이, 출신학교의 명칭 등을 게재하는 등 아직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였다. 보도 내용의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취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1. 21.

<의결번호 2009자심18~22>

• 대상보도

- 충청신문 2009. 1. 19.자 3면 「내연녀에 휘발유 뿌려 불 붙인 40대 검거」 제하의 기사

- 충청투데이 2009. 1. 19.자 6면 「내연녀 살인미수 40대 영장」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09. 1. 17.자 전국면 「내연녀에 휘발유 뿌려 불 붙인 40대 검거」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09. 1. 17.자 전국면 「결별 내연녀 몸에 불 붙인 40대 검거」 제하의 기사

- 제주투데이 2009. 1. 17.자 사회면 「40대, 헤어진 내연녀에 휘발유 뿌려 불 붙여」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는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방화사건이 발생한 노래주점 주인이 방화범과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특정인의 주소를 리까지 적시하는 등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향후 유사 보도 시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2. 16.

<의결번호 2009자심23>

• 대상보도

민주신문 2009. 1. 25.자 제614호 4~5면 「인사성 밝은 건설한 청년」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의 성명, 나이, 출신학교의 이니셜 및 전공학과, 입학·졸업 시기 등을 게재하는 등 그 기사를 접한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도 내용의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취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2. 16.

<의결번호 2009자심24>

• 대상보도

이데일리 2009. 1. 21.자 사회면 「한국은행 옥상 서 前 용역 경비원 추락사」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와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 및 소속 직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와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2. 16.

<의결번호 2009자심25>

• 대상보도

뉴스보이 2009. 1. 10.자 사회면 「가족 심장 파내고 자기 눈도 뽑아」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독자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보도를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외국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충격적인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등 독자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독자들이 불쾌한 감정을 느낄 정도로 필요 이상의 자극적인 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2. 16.

<의결번호 2009자심26>

• 대상보도

노컷뉴스 2009. 1. 20.자 사회면 「용산 철거현장 강제해산 중 '5명 사망'... 중상자 속출」 제하 기사의 보도사진

• 권고사항 : 독자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보도를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용산 철거현장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으로 사람이 불에 타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 보도하였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사건을 보도하는데 있어서 절실한 필요에 의하여 게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보도 사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2. 16.

<의결번호 2009자심27>

• 대상보도

특급뉴스 2009. 2. 15.자 사회면 「다방 종업원 강도 등 살인 피의자, 18회나 범행」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죄수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살인 사건 등의 범행에 사용된 약품의 명칭뿐만 아니라 사용방법 및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이처럼 범행수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유사 범죄에서 모방의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 보도 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를’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3. 23.

〈의결번호 2009자심28〉

• 대상보도

주간 한산신문 2009. 2. 7.자 22면 「경찰서 직원 집 털다 쇠고랑」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강도 사건 등 특정강력범죄 보도 시 그 신고자 또는 목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강도를 붙잡은 특정인의 성명과 나이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소속 단체명 및 직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 유사 보도 시 이와 같이 신원을 알 수 있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3. 23.

〈의결번호 2009자심29〉

• 대상보도

시사저널 2009. 2. 24.자 10면 「용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 야당과 여성 “해야 한다”... 50대 이상 “무슨 소리!”」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등 보도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여론조사 보도는 독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나아가 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3. 23.

〈의결번호 2009자심30〉

• 대상보도

위클리경향 2009. 3. 3.자 33면 「“이메일 지침은 여론조작 시도” 57%」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등 보도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여론조사 보도는 독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나아가 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3. 23.

〈의결번호 2009자십31, 32〉

• 대상보도

- 경향신문 2009. 2. 5.자 1면 「진압작전에 ‘용역 동원’ 확인」 및 2. 6.자 동일면 「“검찰, 용역 동원 알고 있었다”」 제하 기사의 보도 사진과 사진 설명

- 뉴데일리 2009. 2. 5.자 미디어면 「‘살인범 얼굴 공개’ 비판 경향, ‘용역’ 공개」 제하 기사의 보도 사진

• 권고사항 : 언론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자제하여야 한다.

2009. 3. 23.

• 이 유 : 위 기사는 일부 매체의 특정인 초상 공개에 관한 비판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동일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 보도 시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초상 등을 공개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3. 23.

〈의결번호 2009자십33〉

• 대상보도

주간 화순신문 2009. 2. 16.자 7면 「간통으로 고소 당해」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언론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자신의 아내와 화순 모 조합장을 간통죄로 고소한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리 단위

까지 적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특정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 보도 시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3. 23.

〈의결번호 2009자십34~37〉

• 대상보도

- 뉴스웨이21 2009. 2. 20.자 사회면 「해고 양심품은 연쇄 산불 방화범 검거」 제하의 기사

- 아시아경제닷컴 2009. 2. 20.자 사회면 「경북 고령 산불 5회 연속 방화 피의자 검거」 제하의 기사

- 2009. 2. 20.자 환경뉴스면 「면사무소 일용직 해고에 양심품고 산불방화」 제하의 기사

- 중앙폴리스뉴스 2009. 2. 20.자 본청·수도권면 「경북 고령 5회 연속 방화 피의자 검거」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 직전 근무처뿐만 아니라 주소를 리 단위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3. 23.

〈의결번호 2009자심38〉

• 대상보도

경남매일 2009. 2. 4.자 5면 「해경, 보상금 착복 어촌계 직원 등 검거」 제하의 기사

2009. 3. 23.

• 권고사항 :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소속되어 있던 어촌계의 이름과 직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취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3. 23.

〈의결번호 2009자심39〉

• 대상보도

인천신문 2009. 2. 17.자 4면 「“감독이 특하면 때렸다”」 제하의 기사

2009. 3. 23.

• 권고사항 :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나이와 직업 및 소속 직장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취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2009자심40, 41〉

• 대상보도

- 전북중앙신문 2009. 2. 18.자 6면 「‘겁 없는’ 청원경찰」 제하의 기사

- 전라일보 2009. 2. 18.자 4면 「술집 난동-경찰관 폭행 시청 청경 등 3명 입건」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직업 및 소속 직장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취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3. 23.

〈의결번호 2009자심42〉

• 대상보도

녹원뉴스닷컴 2009. 2. 24.자 사회면 「궤동에서 있었던 살인사건 피의자 검거」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범위에 비취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3. 23.

〈의결번호 2009자심43~63〉

• 대상 보도

- 국민일보 2009. 2. 2.자 1면 「고향 서천 화재·살인사건 연루 수사」 제하의 기사와 보도사진
- 동아일보 2009. 2. 2.자 A12면 「강호순 고향 서천 번사-실종 등 5건도 의심」 제하의 기사와 보도사진
- 문화일보 2009. 2. 2.자 5면 「치안공백 '죽음의 사각지대' 불렀다」 제하의 기사와 보도사진
- 서울신문 2009. 2. 2.자 4면 「'反 인륜범' 사진·실명 공개합니다」 제하의 기사와 보도사진
- 세계일보 2009. 2. 2.자 9면 「범인 얼굴 공개합니다」 제하의 기사와 보도사진
- 조선일보 2009. 1. 31.자 A1면 「그도 영혼이 있을까」 및 2. 2.자 A8면 「"얼굴 공개해야 한다" 압도적... '관행' 바꿔야」 제하의 기사와 보도사진
- 중앙일보 2009. 1. 31.자 4면 「"흉악범 발생 막고 추가 범죄 제보 효과" 본지, 공익 위해 강호순 이름·얼굴 공개」 및 2. 2.자 5면 「역대 흉악범 얼굴 공개」, 2. 23.자 10면 「"현장서 사라진 플라스틱 통이 방화 결정적 단서"」 제하의 기사와 보도사진
- 더데일리포커스 2009. 2. 3.자 3면 「강호순 '사형집행 논란' 불 지폈다」 제하의 기사와 보도사진
- 대전일보 2009. 2. 3.자 6면 「경찰, 흉악범 얼굴 공개할까」 제하의 기사와 보도사진
- 중부일보 2009. 2. 2.자 1면 「"어머니와 누이 억

울하게 죽었다 내사했다는 얘기도 믿기 어렵다"」 제하의 기사와 보도사진

- 연합뉴스 2009. 2. 2.자 사회면 「연쇄살인범 강호순」 제하의 기사와 보도사진
- 굿모닝논산 2009. 2. 1.자 사회면 「강호순, 멀쩡한 얼굴이 범행의 무기?」 제하의 기사와 보도사진
- 뉴스한국닷컴 2009. 1. 31.자 이슈&포커스면 「"연쇄살해범 강호순 얼굴공개 여론 수렴해 결론 내자"」 및 2. 2.자 동면 「동아일보, 연쇄 살인범 강호순 새로운 얼굴 공개」 제하의 기사와 보도사진
- 부채질닷컴 2009. 2. 3.자 판따라왕알맹알면 「흉악범 얼굴공개 최대의 살인마 강호순 "여자만 보면 모두 죽여버리고 싶었다"」 제하의 기사와 보도사진
- 뉴스엔뉴스 2009. 1. 31.자 미디어면 「〈조선〉〈중앙〉,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진 공개」 및 2. 1.자 동면 「방송 3사도 모두 '강호순 얼굴' 공개」 제하의 기사와 보도사진
- 서울투데이 2009. 2. 2.자 사건·사고면 「강호순, 추가 범행 은폐할 목적으로 '거짓 자백」 및 2. 4.자 동면 「강호순, "7명 죽이고도 40대 여성 노렸었다"」 제하의 기사와 보도사진
- 영천인터넷뉴스 2009. 2. 3.자 전국면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 얼굴 방송 3사 공개」 제하의 기사와 보도사진
- 데일리썬 2009. 2. 10.자 사회면 「'성적환상' 이 연쇄살인 부른다」 제하의 기사와 보도사진
- 일요서울 2009. 2. 15.자 16~17면 「'성적환상' 이 연쇄살인 부른다」 제하의 기사와 보도사진
- 데일리노컷뉴스 2009. 2. 2.자 2면 「"알 권리" vs "가족이 무슨 죄"」 및 2. 3.자 2면 「경찰 '흉악범 얼굴공개법' 추진」 제하의 기사와 보도사진
- 에이엠세븐 2009. 2. 3.자 4면 「강호순 '22개월 쏠 통화내역' 추적」 제하의 기사와 보도사진

• **권고사항** : 언론은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연쇄살인사건 피의자의 성명 및 초상을 공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초상 공개는 당해 사건의 사회적 파장, 피의자의 자백 및 명백한 증거의 존재, 나아가 범죄 예방 및 추가 범죄에 대한 제보효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은 범죄피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헌법이 그 보호를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라는 점 및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초상 공개로 인해 향후 언론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피의자 신원공개가 남용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증거조작이나 고문에 의한 자백, 여론 재판 등으로 인하여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해 공개수사를 하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공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초상 공개로 인한 공익적 효과 중 하나인 범죄예방효과 측면에서 보더라도 합리적 가치 판단이 불가능한 사이코패스의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초상을 공개하는 것이 곧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언론의 초상 공개로 인해 추가 범죄에 대한 제보효과가 있다는 주장 역시, 이번 흉악범 초상 공개가 수사기관의 제보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를 노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의자의 실명 보도와는 달리 초상이 공개됨으로 인해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2차적 피해와 고통 역시 감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감정만으로 흉악범을 공개처형할 수 없듯이 단순히 국민의 분노에 호응하여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한다는 것 역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한 것이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향후 범죄사건보도에서의 피의자 신원공개에 관

한 사회적인 합의 및 절차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그와 같은 초상의 공개를 허용하는 법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견되지 않는 한, 언론은 피의자 신원공개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3. 23.

〈의결번호 2009자심64~69〉

•대상보도

- News25시 2009. 3. 23,자 사회면 「동거녀(장애자) 살해 압매장, 끔찍한 십대들의 행각」 제하의 기사

- 대구일보 2009. 3. 3,자 5면 「'사기' 대구TP 원장 前 기사 구속」 제하의 기사

- 한민족일보 2009. 3. 3,자 3면 「청와대 보좌관 사칭 前 운전기사 구속」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09. 3. 2,자 사회면 「청와대 고위인사 보좌관 사칭 금품 챙긴 30대 붙잡혀」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09. 3. 2,자 전국면 「청와대 보좌관 사칭 前 운전기사 구속」 제하의 기사

- 아시아투데이닷컴 2009. 3. 2,자 사회면 「청와대 보좌관 사칭 前 운전기사 구속」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나이, 전 직장명 및 직업, 근무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

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4. 20.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4. 20.

〈의결번호 2009자심70~79〉

•대상보도

- 광주매일신문 2009. 3. 20.자 6면 「아들이 집에 불 질러 어머니 숨져」 제하의 기사
- 대한일보 2009. 3. 20.자 17면 「집에 불 질러 어머니 살해」 제하의 기사
- 무등일보 2009. 3. 20.자 4면 「아들이 불 질러 어머니 살해」 제하의 기사
- 아시아일보 2009. 3. 20.자 19면 「집에 불 질러 어머니 살해」 제하의 기사
- 호남매일 2009. 3. 20.자 15면 「집에 불 질러 어머니 숨져」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09. 3. 19.자 사회면 「완도에서 40대 집에 불 질러 어머니 살해」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09. 3. 19.자 전국면 「완도서 아들이 집에 불 질러 어머니 숨져」 제하의 기사
- 일요시사 2009. 3. 29.자 50면 「다툼 벌이다 찾 김에…」 제하의 기사
- 중앙폴리스뉴스 2009. 3. 24.자 전북?전남면 「부부 싸움 뒤 불 질러 70대 노모 숨져」 제하의 기사
- 제주투데이 2009. 3. 19.자 뉴스와이드면 「술 취한 40대, 집에 불 질러 어머니 살해」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뿐만 아니라 주소를 리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의결번호 2009자심80~86〉

•대상보도

- 제주타임스 2009. 3. 14.자 4면 「내무반서 투신 전경 숨져」 제하의 기사
- 뉴스제주 2009. 3. 13.자 사회면 「해경 옥상서 추락한 전경대원 뇌출혈로 사망」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09. 3. 11.자 전국면 「제주해경 전투경찰 2층서 뛰어내려」 제하의 기사
- 이슈제주 2009. 3. 11.자 사회/교육면 「전경대원, 2층 옥상서 추락 ‘중태」 제하의 기사
- 제주뉴시스 2009. 3. 11.자 사회/교육면 「제주해경 갯 배치된 이경 옥상서 투신」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09. 3. 11.자 전국면 「제주해경 별관 옥상서 전경 투신…중상」, 3. 13. 동면 「제주해경 내무반서 투신 전경 결국 숨져」 제하의 기사
- 제주의소리 2009. 3. 11.자 사회면 「제주해경 전경대원 내무반 옥상 10m 높이 추락」, 3. 13. 동면 「제주해경 내무반에서 추락 전경대원… 치료 중 ‘사망」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미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자살(미수)자의 성과 나이, 복무 중인 부대명과 계급, 입대시기 및 재학중인 학교와 출신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응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병동 입원 경력 등을 적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헌법 제21조제4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동 기준 제2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4. 20.

〈의결번호 2009자심87~90〉

• 대상보도

- 전북도민일보 2009. 3. 30.자 5면 「도립국악원 강사 목매 숨겨」 제하의 기사
- 전북일보 2009. 3. 30.자 6면 「도립국악원 풍물교수 자살」 제하의 기사
- 전주일보 2009. 3. 30.자 5면 「도립국악원 강사 자살시도 중태」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09. 3. 27.자 사회면 「전북도립국악원 교수 자살시도, 중태」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미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자살미수자의 성과 나이, 직업 및 소속 직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4. 20.

〈의결번호 2009자심91〉

• 대상보도

- 연합뉴스 2009. 4. 8.자 전국면 「전북국악원노조 “교수 자살” 사과해야」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직업 및 소속 직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4. 20.

〈의결번호 2009자심92〉

• 대상보도

- 전북일보인터넷신문 2009. 3. 29.자 사회면 「도립국악원 풍물교수 자살」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직업 및 소속 직장, 과거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4. 20.

〈의결번호 2009자심93〉

• 대상보도

- 쿠키뉴스 2009. 3. 30.자 사회면 「전북도립국악원 풍물교수 자살」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직업 및 소속 직장, 과거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4. 20.

〈의결번호 2009자심94~97〉

• **대상보도**

- 연합뉴스 2009. 4. 3.자 사회면 「식당 운영적자 쌓이자 방화... 업주 긴급 체포」 제하의 기사

- 경북인터넷뉴스 2009. 4. 3.자 사회면 「구미 후크선장 레스토랑 화재 경영악화로 보험 타내기 위해 업주가 방화」 제하의 기사

- 노컷뉴스 2009. 4. 3.자 사회면 「“적자 때문 자기 식당 방화”, 40대 업주 체포」 제하의 기사

- 중앙폴리스뉴스 2009. 4. 3.자 경남?경북면 「적자 때문 자기 식당에 방화 40대 업주 체포」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형사사건(방화)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운영하던 식당의 위치 및 식당이 목재 선박을 개조한 점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5. 18.

〈의결번호 2009자심98〉

• **대상보도**

중앙폴리스뉴스 2009. 4. 8.자 충남?충북면 「전애인 지갑 들쳐 30만원 절취한 20대 남자 검거」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리 단위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5. 18.

〈의결번호 2009자심99~117〉

• **대상보도**

- 스포츠조선 2009. 4. 23.자 25면 「'스타킹 팔씨름왕' 중학생 전국 돌며 절도 행각」 제하의 기사

- 스포츠칸 2009. 4. 23.자 19면 「'경찰이 꿈이라더니...'」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09. 4. 22.자 전국면 「스타킹 출연 '팔씨름 왕' 중학생, 전국 무대 절도 행각」 제하의 기사

- 경제투데이 2009. 4. 23.자 연예면 「소년 팔씨름왕, 찜질방 절도 '큰 손」 제하의 기사

- 뉴스엔 2009. 4. 23.자 방송연면 「'스타킹' 출연 중학생 팔씨름 왕 절도 혐의로 체포?구속」 제하의 기사

- 뉴스웨이21 2009. 4. 22.자 연예면 「스타킹 팔씨름 소년, 전국 누비며 '절도행각' 벌이다 검거」 제하의 기사

- 뉴스한국닷컴 2009. 4. 22.자 연예?스포츠면 「스타킹 팔씨름 소년 절도 행각 벌여 충격」 제하의 기사

- 독서신문아이 2009. 4. 22.자 뉴스면 「'스타킹' 팔씨름 왕, 커서 경찰되겠다더니... 절도행각 벌여」 제하의 기사

- 디지털한국경제신문 2009. 4. 22.자 경제면 「'스타킹' 10대 팔씨름 왕, 절도 혐의로 경찰 '구속」 제하의 기사

- 브레이크뉴스 2009. 4. 22.자 사회면 「'스타킹 팔씨름 왕' 이 모군, 절도행각 벌이다 체포」 제하의 기사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09. 4. 22.자 종합뉴스면 「스타킹 팔씨름 왕, 전국 무대로 절도 "경찰 된다더니..." 충격」 제하의 기사

- 씨앤비뉴스 2009. 4. 22.자 연예/스포츠면 「스타킹 '팔씨름 왕' 중학생, 전국 무대 절도 행각」 제하의 기사

- 아시아경제닷컴 2009. 4. 23.자 연예면 「'스타킹' 출연 이모군,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제하의 기사

- 아시아투데이닷컴 2009. 4. 22.자 사회면 「스타킹 '팔씨름 왕' 중학생, 절도 혐의로 구속」 제하의 기사

- 아이비타임즈코리아 2009. 4. 22.자 연예면 「스타킹 팔씨름 왕, 경찰 꿈이던 중2... 전국 절도행각」 제하의 기사

- 아주뉴스 2009. 4. 23.자 문화/연예면 「강호동과 펼친 스타킹 팔씨름 왕 '절도 행각」 제하의 기사

- 이뉴스투데이 2009. 4. 22.자 종합면 「스타킹 출연 '팔씨름 왕' 청소년 절도 행각 벌여」 제하의 기사

- 조이뉴스24 2009. 4. 23.자 문화?연예면 「'스타킹' 출연 팔씨름 왕, 전국 돌며 절도행각」 제하의 기사

- 투데이코리아 2009. 4. 22.자 사회면 「'스타킹' 팔씨름 왕 절도행각으로 체포」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미성년자인 형사사건 피

의자의 성뿐만 아니라 그가 TV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형사사건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사회 복귀 가능성을 고려, 관련 보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소년법 제68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5. 18.

〈의결번호 2009 자심118〉

• 대상보도

광주매일신문 2009. 4. 3.자 6면 「광주 동구 재개발추진위원장 자살」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뿐만 아니라 그가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재개발 사업 현장의 소재지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5. 18.

〈의결번호 2009자심119〉

• 대상보도

뉴스21통신사 2009. 4. 30.자 사회면 「군산경찰 총

기 사건... 미용실 여주인 권총 살해」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언론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살인 사건 피해자가 피의자와 '불륜' 관계임을 적시하면서 그의 나이는 물론 그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소재지 및 명칭, 전경 사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 보도 시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초상 등을 공개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헌법 제21조제4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5. 18.

〈의결번호 2009자심120, 121〉

• 대상보도

- 서울신문 2009. 5. 18.자 8면 「호텔서 명문 의대생 투신 사망」 제하의 기사
- 데일리메디 2009. 5. 18.자 뉴스면 「호텔서 투신 자살 의대생 Y대 본과 1년」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과학고 재학 시절 특정 연도에 국제생물올림픽피아드 대회에서 수상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7. 20.

〈의결번호 2009자심122〉

• 대상보도

광주in 2009. 6. 17.자 교육?인권면 「[여고생 자살] 민주노총, 성명서 발표」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자살자의 실명과 나이, 재학 중이던 고교 이름 및 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7. 20.

〈의결번호 2009자심123〉

• 대상보도

경북매일신문 2009. 7. 6.자 5면 「문경시청 공무원 목매 자살」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소속 직장명 및 근무 부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를 위

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7. 20.

<의결번호 2009자심124>

• 대상 보도

시사서울 2009. 5. 10.자 제247호 22면 「“죽는 마당에 처녀 딱지 떨어지면 뭐 어때”」 제하의 기사

2009. 8. 17.

• 권고 사항 :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죄수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살인 미수 사건 등의 범행에 사용된 공기가 들어있는 주사기의 사용방법 및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이처럼 범행수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유사 범죄에서 모방의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 보도 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7. 20.

<의결번호 2009자심125>

• 대상 보도

중앙폴리스뉴스 2009. 7. 7.자 강원도면 「30대 男 자살소동 6시간여 만에 구조」 제하의 기사와 보도 사진

• 권고 사항 : 언론은 사건 보도 시 자살(미수)자 또는 정신질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자살미수자의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거주하고 있는 상가주택의 모습을 담은 보도사진 등을 실어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제1항,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8. 17.

<의결번호 2009자심126~129>

• 대상 보도

- 전북일보 2009. 7. 13.자 6면 「'위장 보험사기' 내사받던 경찰관 자살」 제하의 기사

- 전북일보인터넷신문 2009. 7. 12.자 사회면 「'위장 보험사기' 내사받던 경찰관 자살」 제하의 기사

- 일간대한뉴스 2009. 7. 13.자 사회면 「'위장 보험사기' 내사받던 경찰관 자살」 제하의 기사

- 쿠키뉴스 2009. 7. 13.자 사회면 「'비리혐의' 내사받던 경찰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권고 사항 :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직업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근무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8. 17.

〈의결번호 2009자심130~157〉

• 대상보도

- 중앙일보 2009. 7. 21.자 6면 「도장공장 접거 노조원들 화염병?새총 쏘며 저항 평택공장을 지금 전쟁터」 제하의 기사
- 서울경제 2009. 7. 21.자 1면 「쌍용차 사태 '일촉즉발'」 제하의 기사
- 한국일보 2009. 7. 21.자 1면 「쌍용車 공권력 투입 '일촉즉발'」 제하의 기사
- 뉴시스 2009. 7. 20.자 사회면 「꼬이는 쌍용차... 강제집행 실패, 공권력 투입도 불투명」 제하의 기사
- 경기조은뉴스 2009. 7. 20.자 사회면 「쌍용차 노조 간부 아내 자살 충격!」 제하의 기사
- 경제투데이 2009. 7. 20.자 사회면 「자살한 쌍용차 노조 정책부장 부인, 우울증 시달려」 제하의 기사
- 광주in 2009. 7. 20.자 노동면 「노조 정책부장 부인 자택에서 자살」 제하의 기사
- 뉴스비전 2009. 7. 20.자 사회면 「쌍용차 노조 간부 부인 '자살」 제하의 기사
- 뉴스토마토 2009. 7. 20.자 뉴스면 「쌍용차 노조 간부 부인 '자살」 제하의 기사
- 뉴스캔 2009. 7. 20.자 사회면 「쌍용차 지부 간부 부인 자살」 제하의 기사
- 더데일리 2009. 7. 20.자 경기면 「쌍용차 노조 간부 아내, 결국 숨져」 제하의 기사
- 데일리중앙 2009. 7. 20.자 뉴스면 「쌍용차 노조 가족 스스로 목숨 끊어... 외압설 파장」 제하의 기사
- 레디앙 2009. 7. 20.자 뉴스면 「쌍용차 노동자 부인 목매 자살」 제하의 기사
- 민중의소리 2009. 7. 20.자 사회면 「쌍용차 노조 정책부장 부인 자택에서 자살」 제하의 기사
- 뷰스앤뉴스 2009. 7. 20.자 노동면 「쌍용차 노조 간부 부인 자살」 제하의 기사
- 브레이크뉴스 2009. 7. 20.자 사회면 「쌍용자동차 조합원 부인 자살 파문」 제하의 기사
- 시사서울닷컴 2009. 7. 21.자 사회면 「협박과 회유에 스트레스... 끝내 자살」 제하의 기사
- 아시아투데이닷컴 2009. 7. 20.자 사회면 「쌍용차 노조 정책부장 부인 자택서 목매 자살」 제하의

기사

- 아주뉴스 2009. 7. 20.자 철강면 「쌍용차 노조 정책부장 부인 자살... "어렵고 힘들었다"」 제하의 기사
- 오마이뉴스 2009. 7. 20.자 사회면 「"잇단 가압류-소환장 등에 심적 고통 느낀 듯"」 제하의 기사
- 이뉴스투데이 2009. 7. 20.자 사회면 「쌍용차, 노조 간부 부인 자살」 제하의 기사
- 이데일리 2009. 7. 20.자 뉴스면 「강제집행 불발 쌍용차, 긴장감 고조」 제하의 기사
- 인터넷조은뉴스 2009. 7. 20.자 사회면 「쌍용차 노조, 정책부장 부인 자살」 제하의 기사
- 인터넷미디어오늘 2009. 7. 20.자 경제면 「쌍용차 노조 간부 부인 자살... 책임공방 가열」 제하의 기사
- 인터넷일간경기 2009. 7. 20.자 사회면 「쌍용차 노조 간부 아내 자살」 제하의 기사
- 제주투데이 2009. 7. 20.자 국내면 「쌍용차 노조 간부 아내 자살... 노사 책임공방 가열」 제하의 기사
- 펜소리뉴스 2009. 7. 20.자 뉴스면 「쌍용차 지부 간부 부인 자살」 제하의 기사
- 프레시안 2009. 7. 22.자 사회면 「젊은 아내 먼저 보내며 "미안하다, 미안하다!"」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특정 노조의 간부로 있는 남편의 성명, 직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8. 17.

〈의결번호 2009자심158~161〉

• 대상보도

- 스포츠조선 2009. 7. 10.자 21면 「탈런트 김다혜

남편 자살」 제하의 기사

- 일간스포츠 2009. 7. 10.자 34면 「개그우먼 김지선 전 매니저 모텔서 자살」 제하의 기사
- 부산일보 2009. 7. 11.자 16면 「유명연예인 전 매니저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노컷뉴스 2009. 7. 9.자 연예면 「前 유명개그맨 매니저 신변비관 자살」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그가 운영했던 기업의 명칭,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로 활동한 경력뿐만 아니라 부인의 성명 및 아역출신 탤런트라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8. 17.

〈의결번호 2009자심162〉

• 대상보도

뉴스코리아인포 2009. 8. 25.자 사회면 「이영애 남편은 심은하에게 파혼당했었다?」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언론은 연예인 관련 기사에서 그의 배우자 등에 대한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유명 탤런트의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구체적으로 인용, 기사화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조, 헌법 제21조제

4항, 형법 30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9. 21.

〈의결번호 2009자심163〉

• 대상보도

코리아뉴스 2009. 8. 10.자 사회면 「선원 폭행 일삼은 30대 선장 구속」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선장으로 있는 선박의 명칭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취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9. 21.

〈의결번호 2009자심164~168〉

• 대상보도

- 서울신문 2009. 8. 29.자 9면 「보이스피싱 수역 쟁긴 前 역도 국가대표 구속」 제하의 기사
- 중부일보 2009. 8. 29.자 14면 「수역원대 보이스피싱 前 역도 국가대표 선수 구속」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09. 8. 28.자 사회면 「역대 보이스피싱 前 역도 국가대표 선수 구속」 제하의 기사
- 뉴스웨이21 2009. 8. 28.자 사회면 「전직 역도 국가대표 선수, 전화 사기로 구속」 제하의 기사

- 아이비타임즈코리아 2009. 8. 28.자 라이프면
「보이스피싱 국가대표 역도선수, 구속 ‘마이네스
통장으로 유인」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
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특정 시기
에 역도 국가대표 선수를 지냈으며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
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범
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
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
다.

2009. 9. 21.

〈의결번호 2009자심169~201〉

• 대상보도

- 고성인터넷뉴스 2009. 7. 9.자 뉴스면 「탤런트
김다혜씨 남편 통영 모텔서 자살」 제하의 기사

- 굿데이 2009. 7. 12.자 방송연예면 「김다혜 남편
장모씨 모텔서 '자살'... 금전문제 비판」 제하의
기사

- 네이션코리아 2009. 7. 9.자 사회면 「아역출신
김다혜 남편, 자살해 '충격」 제하의 기사

- 뉴데일리 2009. 7. 9.자 뉴스면 「남희석-김지선
전 매니저 장모씨,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뉴스엔 2009. 7. 9.자 연예가화제면 「김다혜 남
편 장모씨 '빛으로 인한 채무관계로 자살 선택한
듯」 제하의 기사

- 뉴스웨이21 2009. 7. 11.자 뉴스면 「김다혜 남편
장모씨, 채무 관계로 인한 '자살' 추정」 제하의 기
사

- 뉴스캔 2009. 7. 9.자 연예/스포츠면 「김지선 전

매니저 자살」 제하의 기사

- 뉴스한국닷컴 2009. 7. 13.자 연예·스포츠면 「탤
런트 김다혜, 남편 장씨 발인식에 오열」 제하의 기사

- 데일리안 2009. 7. 9.자 연예면 「'아역' 출신 김
다혜 남편 사망... 또 다시 슬픔에 빠진 연예계」
제하의 기사

- 독서신문아이 2009. 7. 9.자 뉴스면 「탤런트 김
다혜 남편 자살로 추정」 제하의 기사

- 디지뉴스 2009. 7. 9.자 엔터테인먼트면 「김다
혜 남편 장 씨, 숨진 채 발견... 자살 추정」 제하의
기사

- 디지털한국재경신문 2009. 7. 9.자 연예면 「'아
역스타' 김다혜의 남편, "아내에게 유서 남기고 자
살..."」 제하의 기사

- 메디컬투데이 2009. 7. 9.자 뉴스투데이면 「김
다혜 남편, 경남 통영의 한 여관에서 자살한 진짜
이유는·」 제하의 기사

- 브레이크뉴스 2009. 7. 9.자 사회면 「자살한 김
다혜 남편, 지인에게 전화해 "이 바닥 떠나겠다"」
제하의 기사

- 비즈플레이스인터넷 2009. 7. 9.자 비즈매거진
면 「김다혜 남편, 장모씨 자살... 자금난 문제인
듯」 제하의 기사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09. 7. 9.자 스포츠·연
예면 「김다혜 남편 자살 이유 "결국 돈 때문!"」
제하의 기사

- 씨앤비뉴스 2009. 7. 9.자 스포츠/연예면 「아역
스타 출신 김다혜 남편, 자살 '충격'...」 제하의 기사

- 아시아경제닷컴 2009. 7. 11.자 연예·스포츠면
「매니저 장모씨 자살 충격... 어두운 연예계 짙어
볼 계기」 제하의 기사

- 아시아투데이닷컴 2009. 7. 9.자 사회면 「남희
석-김지선 매니저 8일 시신 발견」 제하의 기사

- 아이비타임즈코리아 2009. 7. 9.자 연예·스포
츠면 「아역 출신 배우 김다혜 남편 장씨의 자살
원인은...」 제하의 기사

- 아주뉴스 2009. 7. 9.자 뉴스종합면 「결혼 2년만
에 시신으로... 김다혜 남편·김지선 前 매니저」
제하의 기사

- 오에스이엔 2009. 7. 9.자 연예면 「김다혜 남편
장모씨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이뉴스투데이 2009. 7. 9.자 종합면 「남희석 전

- 매니저 왜 극단적 자살 택했나·」 제하의 기사
- 이데일리 2009. 7. 9.자 연예CLICK면 「배우 김다혜 남편 장모씨 통영서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인터넷일간경기 2009. 7. 10.자 뉴스면 「김다혜 남편 자살 자금압박 못 견디…」 제하의 기사
 - 통영뉴스발신지 2009. 7. 9.자 사회/경제면 「30대 연예인 매니저 통영서 번개탄 자살」 제하의 기사
 - 통영인터넷뉴스 2009. 7. 9.자 뉴스면 「텔런트 김다혜씨 남편 통영 모텔서 자살」 제하의 기사
 - 투데이코리아 2009. 7. 10.자 뉴스면 「김다혜 남편, 부채부담으로 세상 등저」 제하의 기사
 - 투데이포커스 2009. 7. 9.자 스포츠·연예면 「텔런트 김다혜 남편 장모씨, 번개탄에 질식사… 자살로 추정」 제하의 기사
 - 파이미디어 2009. 7. 9.자 뉴스면 「김다혜 남편, 남희석 전 매니저 통영서 자살」 제하의 기사
 - 프런티어타임스 2009. 7. 9.자 문화면 「김지선, 남희석 前 매니저, 김다혜 남편 자살… 빛·」 제하의 기사
 - 프리즌뉴스 2009. 7. 9.자 스포츠면 「아역배우 출신 김다혜 남편 장모씨 자살」 제하의 기사
 - 헬스코리아뉴스 2009. 7. 9.자 짬뉴스면 「김다혜 남편 자살 사건 안재환가 너무 흡사하다」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로 활동한 경력뿐만 아니라 아역 출신 텔런트인 본인의 사진 및 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9. 21.

〈의결번호 2009자심202〉

• 대상보도

홍성타임스 2009. 9. 30.자 사회면 「아찔한 사고 현장」 제하의 보도사진

• 권고사항 : 언론은 사건사고 기사에서 당사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보도 사진은 차량 충돌 사고가 있었던 현장을 담으면서 개인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내보내 차주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차량사고의 경우 해당 차량 번호 등을 밝힐만한 공공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헌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11. 16.

〈의결번호 2009자심203〉

• 대상보도

노컷뉴스 2009. 10. 26.자 사회면 「몰락한 前 세계권투 챔피언, 그는 누구」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형사사건 보도 시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로 피의자에 대해 상세히 공표하는 것은 유의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가 前 세계권투 챔피언인 사실과 함께 성과 나이, 선수시절 자세한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범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헌

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11. 16.

〈의결번호 2009자심204〉

• 대상보도

현대일보 2009. 10. 26.자 사회면 「치매노인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부인의 성명과 나이 뿐만 아니라 주소를 상세하게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11. 16.

〈의결번호 2009자심205〉

• 대상보도

중앙일보 2009. 11. 27.자 19면 「환자가 간호사 흉기로 찔려 살해」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살인미수 등 특정강력범죄 보도 시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병원의 진료과목 및 위치 등을 구체

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 유사 보도 시 이와 같이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12. 14.

〈의결번호 2009자심206, 207〉

• 대상보도

- 노컷뉴스 2009. 11. 19.자 사회면 「서귀포해상 선박 충돌은 '쌍방과실」 제하의 기사

- 뉴스웨이21 2009. 11. 20.자 사건/사고면 「서귀포 선박 충돌 사고 '상과과실'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선장으로 있는 선박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12. 14.

〈의결번호 2009자심208~212〉

• 대상보도

- 경인일보 2009. 11. 25.자 19면 「자동차정비조합

- 「폐유공급 대가’ 뒷돈」 제하의 기사
 - 경기신문 2009. 11. 25.자 6면 「폐유 수거권 대가 16억 수수」 제하의 기사
 - 연합뉴스 2009. 11. 24.자 사회면 「‘폐유수거권’ 대가 거액 수수… 62명 입건」 제하의 기사
 - 노컷뉴스 2009. 11. 24.자 사회면 「‘폐유수거권’ 대가 수익원 수수… 62명 입건」 제하의 기사
 - 뉴스웨이21 2009. 11. 24.자 사건/사고면 「특정 업체 ‘몰아주기’로 16억원 챙긴 조합원 무더기 적발」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속한 단체명과 직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12. 14.

〈의결번호 2009자심213, 214〉

- 대상보도
 - 제민일보 2009. 11. 26.자 5면 「중국·타지역 어선 불법어업 기승」 제하의 기사
 - 제주일보 2009. 11. 26.자 5면 「불법조업 어선 2척 적발」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선장으로 있는 선박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12. 14.

〈의결번호 2009자심215〉

- 대상보도
 - 인터넷일간경기 2009. 11. 27.자 뉴스면 「술 마시고 부부-친구간 싸움」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형사사건 보도 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12. 14.

〈의결번호 2009자심216~218〉

- 대상보도
 - 중부일보 2009. 11. 28.자 14면 「용인시, 공무원 잇단 자살로 ‘슬렁」」 제하의 기사

- 용인뉴스 2009. 11. 27.자 사건/사고면 「수지구 청 공무원 자살」 제하의 기사

- 일간뉴스리더 2009. 11. 27.자 경제/사회면 「용인시 공무원 또 자살... 집에서 창틀에 목 매 유서에서 “빛이 많아”... 고 김종우씨 사건 회석도 우려」 제하의 기사

• 권고사항 : 자살사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 유 :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와 소속 부서, 직급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12. 14.

신청심의 시정권고

〈의결번호 2009신심1~34〉

• **대상보도**

- YTN 2009. 2. 17. 「지네 등 동물성 한약재 수은 검출」 제목의 보도
- 청년의사 2009. 2. 23.자 29면 「“전갈 등 동물성 한약재서 ‘수은’ 검출”」 제하의 보도
- 아시아투데이 2009. 2. 17. 「지네 등 동물성 한약재 수은 검출」 제하의 보도
- KBS-1TV 2009. 2. 17. 뉴스5 「전갈 등 한약재서 메틸수은 검출」 제목의 보도
- SBS-TV 2009. 2. 17. 8뉴스 「식약청 “지네 등 동물성 한약재 수은 미량 검출”」보도(자막)

• **권고사항** :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선정해서는 아니된다.

• **이유** : 피신청인은 「지네 등 동물성 한약재 수은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한 국내 유통 한약재의 중금속 수은 오염량 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식약청이 동물성 한약재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수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오염 수준을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은이 검출된 일부 동물성 한약재의 경우 그 검출량이 국제식품규격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식품 어류의 수은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은 검출 사실만을 제목으로 부각 보도하여 한약재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므로 시정권고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현재 세계적으로 동물성 한약재의 수은 함량에 대한 기준치는 없으며, 이번에 검출된 수은 함량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 어류 권고기준보다 낮다는 점은 보도내용에서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단지 「지네 등 동물성 한약재 수은 검출」이라고 하였고, 또한 비교대상이 아님에도 기사 본문에 ‘식물성 한약재 기준을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고 보도하

였다. 따라서 이를 접한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마치 동물성 한약재가 인체에 유해한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전체 한약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3. 23.

〈의결번호 2009신심35〉

• **대상보도**

뉴스스 2009. 4. 8. 뉴스면 「이 시간 ‘대팔방’ 그 밑실에서는…」 제하의 보도

• **권고사항** : 통신사라는 매체 특성을 감안할 때, 성매매 업소 고발 기사에서 영업실태를 과도하게 자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이유** : 피신청인은 「이 시간 ‘대팔방’ 그 밑실에서는…」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업소인 ‘대팔방’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보도가 성매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성매매 행위 및 방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매체에 이 같은 선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여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정권고를 신청했다.

살피건대, 언론이 정당한 사회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활동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의 이 건 보도는 성매매특별법 이후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유사성 행위 업소인 ‘대팔방’의 실태를 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점을 인정한

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행위 및 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술하여 이를 접한 일반인들을 자칫 성매매 범죄로 유인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보도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해 피신청인은 언론사에 뉴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사로서 매체의 성격상 생산한 기사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보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기

사와 같이 불법인 유사 성행위 관련 실태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009. 4. 20